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589

발의연월일: 2025. 2. 28.

발 의 자:임호선·정준호·김재원

이학영 · 김영진 · 허 영

정일영 • 전진숙 • 이원택

전용기 · 위성락 · 서왕진

송재봉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 등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목벌채 등에 대하여 허가 하기 전에 전문기관을 통해 사전타당성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산림자원 개발의 편의를 위해 개발 허가를 받기 어려운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을 고의로 훼손시키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데, 지난 5년간 생태·자연도 등급을 낮춰 산림 개발을 승인받은 곳 중 채굴장, 골프장 등이 건설되고 있는 사례가 35건에 이르고 있어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입목벌채 등이 행하여지는 산림에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국립생태원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산림 훼손을 방지하고 산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4제4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4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입목벌채등이 행하여지는 산림에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1등급권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의 의견을 들어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타당성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검토 중인 사전타당성조사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의4(입목벌채등의 사전타	제36조의4(입목벌채등의 사전타
당성조사 등) ① ~ ③ (생	당성조사 등) ① ~ ③ (현행과
략)	같음)
<u> <신 설></u>	④ 제1항에 따른 사전타당성조
	사의 대상이 되는 입목벌채등
	이 행하여지는 산림에 「자연
	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제1
	호에 따른 1등급 권역이 포함
	되는 경우에는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의 의견을 들
	어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u>④</u> 제1항부터 <u>제3항</u> 까지에 따	<u>⑤</u> <u>제4항</u>
른 사전타당성조사의 절차ㆍ기	
준 • 방법, 전문기관에 대한 감	
독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u>.</u>